의 안 번 호			제 984 호			
의		결		년	월	일
연	월	일		(제	Š	력)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2년 1월 18일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984 제안연월일: 2022년 1월 18일 제 안 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 →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
- 3. 규칙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붙임

○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
O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"를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「지방자치법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법</u>
<u>시행령」제60조</u> 에 따라 충청북도	시행령」 제59조
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	
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	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85조(청원서의 제출)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적고 서명・날인하여야 한다.
- 제86조(청원의 불수리)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.
- 제87조(청원의 심사·처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.
-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88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 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9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 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청원법

- 제6조(청원 처리의 예회)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(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에게 알려야한다.
 - 1.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 - 2. 감사·수사·재판·행정심판·조정·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·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- 3.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
 - 4.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
 - 5.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 - 6. 청원인의 성명,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